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1. 10 선고 2021가단1012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섭

변론 종결 2021. 10. 13.

판결 선고 2021. 11. 10.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2. 15. 체결된 명의신탁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6. 11. 24. 체결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각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6. 2. 16. 접수 제8806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11. 24. 접수 제72894호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중 각 1/2 지분에 대하여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8. 소외 C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2가소313672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8. 29. 'C는 원고에게 2012. 8. 31.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C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등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6. 2. 16. 위 C의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등기원인 2016. 2. 15. 매매, 등기부상 거래가액 35,800,000원), 이 사건 건물(허가일 2016. 4. 22. 착공일 2016. 4. 26. 사용승인일 2016. 11. 8.)에 대하여 2016. 11. 24.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아산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남편인 C의 수입으로 매수하고 신축한 것이거나 부부인 피고와 C의 공유재산인데, C가 원고의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 등으로 각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인바,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각 1/2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C의 채권자인 원고는 C를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각 1/2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C에게 위 각 1/2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64232(본소), 2017다264249(반소)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의 적용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부부의 일방인 피고가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 거래가액,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 피고의 기존 재산, 피고 자녀 등에 의한 증여액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의 아산시 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의 수입액(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총 소득 합계 약 9,763여 만원) 등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다른 일방 배우자인 C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전부 내지 각 1/2 지분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홍성욱

별지

1) 원고 소장, 각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준비서면상 주장 등에 기하여 설행하여 정리하였다.

2) 상동